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2. 13.(목) 10:00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76호
- 나. 제 출 자 : 정재동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5. 1. 23.
- 라. 회부일자 : 2025. 1. 23.

## 2. 제안이유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체육을 진흥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 나. 운영비 지원 조항에서 ‘금천구장애인체육회’ 문구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별도 규정함(안 제13조).
- 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신설).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8조, 제33조의2, 제43조, 제44조, 제33조의3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5. 검토의견

### 가. 개정 이유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금천구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1)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2) 운영비 지원 조항에서 ‘금천구장애인체육회’ 문구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별도 규정함(안 제13조).
- 3)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신설).
  -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에 지도·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의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체육단체 등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금천구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계법령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193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평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신설 2020. 12. 8.>

**제44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